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심 내 공실인 민간 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매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 용도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가능토록 허용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적용 중인 전세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및 주차장 특례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

- 1) 공장을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무시설 등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2) 비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 약정방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매입 후 추진 시에도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안 제40조제2항)

하위 지침에 선제 적용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 자녀수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임대 전용면적 제한 예외 규정상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6. 00. ~ 0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제14호 또는 제15호”를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로,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을 “체결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세”를 “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3. -----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 ----- ----- --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	⑤ ----- ----- --- 체결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 ----- ----- ----- -----

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u>세</u>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③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두</u>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연 락 처	(044) 201 - 4479